



제 611호 2024. 5. 30 (목)

입법예고

제2024-2606호 김해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8579

고 시

제2024-193호 김해도시계획시설(정자나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8588
 제2024-194호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분산성공원)사업 38592
 실시계획(변경) 고시
 제2024-195호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김해대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38594
 제2024-196호 김해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정정) 및 지형도면 고시 38596

공 고

제2024-2564호 공인조례 폐기 공인 38598
 제2024-2626호 김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준공인가 공고 38600

김해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 경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김해시 경관계획 재정비 사항 및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하여 『김해시 경관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변경(안 제26조)
- 공공건축물 경관위원회의 자문 절차 생략 신설(안 제29조)
- 경관위원회 소위원회 서면 운영 신설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문구 수정(안 제31조)
- 그 밖에 상위법령(「경관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안 제8조, 제27조 및 제34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참조 : 도시디자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5092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도시디자인과(디자인정책팀)

○ 전 화 : 055-330-3345 (FAX : 055-722-1541)

○ E-mail : 15sy@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김해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김해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4년 월 일
제출자 : 김해시장

1. 제안이유

-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김해시 경관계획 재정비 사항 및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김해시 경관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변경(안 제26조)
- 공공건축물 경관위원회의 자문 절차 생략 신설(안 제29조)
- 경관위원회 소위원회 서면 운영 신설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문구 수정(안 제31조)
- 그 밖에 상위법령(「경관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안 제8조, 제27조 및 제34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불 임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 규제개혁심사(법무담당관) :
 -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 입법예고 : 2024. 5. ~ (20일 이상)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불임
- 조례·규칙심의회 : 2024. 9.

김해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조제2항”을 “영 제5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4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나. 4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다. 옥외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라. 중점경관관리구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에 따른 국가지정 문화유산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구역(9구역 제외)과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 1호 인접 취락지구(봉하마을)는 2층 이상 또는 8미터 이상 건축물

4의2. 연면적 100,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높이 40미터 이상인 창고·공장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3조제5항”을 “영 제23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된다”를 “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부위원장 이”를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로 “대행한다.”를 “대행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된다.”를 “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있다.”를 “있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발언할 수 있다.”를 “발언 가능”으로 한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르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자문 절차 생략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각 호를 준용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를 “위원회”로, “하며, 위원회의 자문은”을 “하되, 위원회의 자문, 소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은 필요시”로, “갈음할 수 있다”를 “대체 가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시할 수 있

다”를 “제시 가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를 “위원회 개최 가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이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자문 생략 가능

제34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4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로, “대상”을 “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것, 「김해시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심의 등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3조(개발행위에 따른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 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심의 등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4조(도시디자인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친 내용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김해시 도시디자인과 업무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자문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u>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u></p> <p>3. · 4. (생략)</p> <p><u><신 설></u></p> <p>5. (생략)</p> <p>② (생략)</p> <p>제2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 - 영 제5조-----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u>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4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나. 4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다. 옥외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라. 중점경관관리구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른 국가지정 문화유산 주변 현상 변경허용기준구역(9구역 제외)과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 1호 인접 취락지구(봉하마을)는 2층 이상 또는 8미터 이상 건축물</p> <p>3. · 4. (현행과 같음)</p> <p><u>4의2. 연면적 100,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높이 40미터 이상인 창고·공장</u></p> <p>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 -----.</p>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9조(경관위원회의 자문 대상) (생략)

<신설>

제31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
----- 될
것

2. -----
-----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 대행할 것

3. -----

- 될 것

4. -----

----- 있음

5. -----

----- 발언 가능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경관위원회의 자문 대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에 따르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자문 절차 생략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각 호를 준용한다.

제31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1. -----

----- 해제 가능

2.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의에 따른 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자문은 서면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회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사전 검토를 요청 받은 위원은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사업주체에게 제4호에 따른 사전검토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6.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 라. (생략)

제34조(공공디자인 경관협의를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경관협의를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공동주택의 재도색(「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에 한정한다)

4. ~ 7. (생략)

③ ~ ⑤ (생략)

2.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이 비공개로 전환 가능

3. 위원회-----

하되, 위원회의 자문, 소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은 필요시 ----- 대체 가능

4. -----

----- 제시 가능

5. -----
----- 위원회 개최 가능

6.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이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자문 생략 가능

가. ~ 라. (현행과 같음)

제34조(공공디자인 경관협의를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대상 공동주택---

4.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규제영향분석서

I. 분석대상 규제 개요

1.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변경					
2. 구 분	신설	○	강화		존속기한장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부서 :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 작 성 자 :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디자인정책팀장 김영준 담 당 자 이수연 					
4. 근거법령명 등	○ 경관법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제1항 제4호					
5.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건축하고자하는 건축주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p>「김해시 경관 조례」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 규제의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관지구의 건축물(「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업무시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다. 운동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마. 노유자시설 바. 관광 휴게시설 4.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중 7층 이상인 건축물 5.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 ○ 신설 규제의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4.2 연면적 100,000제곱미터상이거나 높이 40미터이상인 창고.공장 					
7. 규제의 존속 기한과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완화 시까지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 					

김해도시계획시설(정자나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김해도시계획시설(정자나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김해시 공원녹지과(055-350-637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5월 30일

김 해 시 장

1. 도시계획시설(정자나무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4	관동1 공원	근린 공원	관동동 448-7번지 일원	11,927.2	-	11,927.2	국토교통부고시 제1996-353호 (1996.11.12.)	
변경	14	정자나무 공원	근린 공원	관동동 448-7번지 일원	11,927.2	-	11,927.2	국토교통부고시 제1996-353호 (1996.11.12.)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총괄표(변경)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면적		11,927.2	-	11,927.2	
시설면적계		4,630.9	증) 42.0	4,672.9	기정 시설률 38.83% 변경 시설률 39.18%
건축 규모	건축면적	39.6	증) 4.37	43.97	기정 건폐율 0.33% 변경 건폐율 0.37%
	연 면 적	39.6	증) 4.37	43.97	기정 용적률 0.33% 변경 용적률 0.37%

2) 변경사유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4	정자나무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공원시설 면적 변경 : 4,630.9㎡→4,672.9㎡ 증) 42.0㎡공원건축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변경 : 39.6㎡→43.97㎡ 증) 4.37㎡	<ul style="list-style-type: none">명칭 변경 - 관동1공원(도시계획시설 결정당시 명칭) ▶“정자나무공원”으로 변경공원 세부시설 변경(화장실 및 파고라 설치)을 통한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및 공원 이용률 제고를 위해 공원조성 계획 변경코자 함

3) 토지이용계획표(변경)

시 설 명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 원 총 면 적	11,927.2	-	11,927.2	100.00	
공 원 시 설 계	4,630.9	증) 42.0	4,672.9	39.18	
도로 및 광장	3,971.7	-	3,971.7	33.30	
조 경 시 설	286.2	-	286.2	2.40	
운 동 시 설	303.4	-	303.4	2.54	
편 익 시 설	69.6	-	69.6	0.58	
휴 양 시 설	-	증) 42.0	42.0	0.35	
녹지 및 기타	7,296.3	감) 42.0	7,254.3	60.82	

4) 세부시설조사

(1) 도로 및 광장(변경없음)

구 분	도면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		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소 계		448-7번지 일원	3,971.7	-	-	-	
기정	도로(소계)		"	806.2	-	-	-	
기정	광장(소계)		"	3,165.5	-	-	-	
기정	1-1	광장1	"	3,071.2	-	-	-	
기정	1-2	광장2	"	94.3	-	-	-	

(2) 조경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		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소 계		448-7번지 일원	286.2	-	-	-	
기정	2	정자나무	"	261.2	-	-	-	
기정	5	분수대	"	25.0	-	-	-	

(3) 운동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		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소계	448-7번지 일원	303.4	-	-	-	
기정	3	체력단련장	"	303.4	-	-	-	

(4) 편익시설(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		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소계	448-7번지 일원	69.6	39.6	39.6	1층	
변경		소계	"	69.6	43.97	43.97	1층	
기정	4	화 장 실	448-7번지 일원	69.6	39.6	39.6	1층	
변경	4	화 장 실	"	69.6	43.97	43.97	1층	

(5) 휴양시설(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		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신설		소계	448-7번지 일원	42.0	-	-	-	
신설	6	파고라	"	42.0	-	-	-	

(6) 녹지(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		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소계	448-7번지 일원	7,296.3	-	-	-	
변경		소계	"	7,254.3	-	-	-	
기정	-	녹 지	448-7번지 일원	7,296.3	-	-	-	
변경	-	녹지	"	7,254.3	-	-	-	

5) 도로조서 총괄표(변경없음)

구 분		합 계		소 로		세 로		비 고
		연장(m)	면적(m ²)	연장(m)	면적(m ²)	연장(m)	면적(m ²)	
합계	기정	286	806.2	31	187.1	255	619.1	
3류	기정	31	187.1	31	187.1	-	-	
세로	기정	255	619.1	-	-	255	619.1	

6) 세부도로조서(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m 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3	1	6	31	187.1	진입로	광장2	광장1	
기정	세로		1	3	103	279.9	순환로	세로4	소로7	
기정	세로		2	3	17	49.8	진입로	소로3-202	광장1	
기정	세로		3	3	17	51.7	진입로	소로3-202	광장1	
기정	세로		4	2	26	52.9	진입로	소로3-202	광장1	
기정	세로		5	2	33	65.4	진입로	소로3-202	광장1	
기정	세로		6	2	33	65.9	진입로	소로3-202	광장1	
기정	세로		7	2	26	53.5	진입로	소로3-202	광장1	
합 계					286	806.2				

3.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분산성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분산성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고 동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김 해 시 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해시 어방동 997-12번지 일원(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분산성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김해시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사업
-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결정(㎡)	시행면적(㎡)	시행규모	비 고
근린공원	520,458	15,412	반려견 놀이터 및 주차장	최초결정일 1986.10.10.

-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용도별	
		편의시설(주차장)	기타시설(반려견 놀이터)
면적(㎡)	15,412	4,566	10,846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김해시장(공원녹지과장)
 - 주 소 :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623)
- 사업기간(변경)
 - 기 정 : 2020. 06. 26. ~ 2024. 06. 25.
 - 변 경 : 2020. 06. 26. ~ 2025. 12. 31.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불임
- 실시계획(변경) 신청사유
 -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사업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055-330-3595) 및 공원녹지과(☎055-350-6373)비치】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비고
				공부상 면 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1	김해시 어방동	997-12	도	97	97	김해시		
2	“	984-31	전	1,298	1,298	김해시		
3	“	986-2	원	2,189	2,189	김해시		
4	“	984-43	전	216	216	김해시		
5	“	984-44	전	192	192	김해시		
6	“	984-46	전	959	959	김해시		
7	“	984-64	전	585	585	김해시		
8	“	984-40	전	113	35	김해시		
9	“	산2-85	임	3,542	3,510	김해시		
10	“	984-65	전	171	171	김해시		
11	“	984-38	전	1,150	1,150	김해시		
12	“	984-56	임	130	130	김해시		
13	“	984-37	답	284	284	김해시		
14	“	984-2	답	2,083	2,083	김해시		
15	“	986-3	원	746	746	김해시		
16	“	984-23	전	1,632	1,632	김해시		
17	“	986-4	원	135	135	김해시		
소 계				15,522	15,412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김해대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김해대학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동 사항을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김 해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남 김해시 삼방동 산77-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김해대학교)사업
- 사업의 명칭 : 김해대학교 실천관 부지증축 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도시계획 결정(㎡)	시행규모(㎡)		비고
		기정	변경	
학교 (대학교)	161,452	· 대지면적: 67,474.0㎡ · 건축면적: 6,089.02㎡ · 연 면 적: 25,113.64㎡ · 건폐율: 9.02% · 용적률: 34.30%	· 대지면적: 67,474.0㎡ · 건축면적: 6,743.04㎡ · 연 면 적: 28,089.44㎡ · 건폐율: 9.99% · 용적률: 38.71%	- 최초결정일 (2001.07.05.) - 실천관 증축 · 건축면적 : 654.02㎡ · 연 면 적 : 2,975.8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학교법인 영해학원
- 주 소 : 경남 김해시 삼안로 112번길 198(삼방동)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6.02.28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 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7. 실시계획인가 신청사유

- 양질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학생 활동을 지원하는 다목적실을 설치하고자 실천관을 증축하기 위함.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055-330-3595)비치】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 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삼방동	산76-1	임	55,731	7,838	학교법인 영해 학원	김해시 삼안로 112번길 198				
삼방동	산77-8	구	4,462	1,783	학교법인 영해 학원	김해시 삼안로 112번길 198				
삼방동	산77-9	임	97,681	56,784	학교법인 영해 학원	김해시 삼안로 112번길 198				
삼방동	산78	임	1,190	887	학교법인 영해 학원	김해시 삼안로 112번길 198				
삼방동	697-1	답	182	182	학교법인 영해 학원	김해시 삼안로 112번길 198				

김해시 고시 제2024-196호

김해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정정) 및 지형도면 고시

김해시고시 제2024-185호(2024.5.23.)로 고시한 「김해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관련 일부 시설 정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김해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정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김 해 시 장

1. 김해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정정) 조서 : 붙임
2. 실효일자 : 2024. 05. 06.
3. 실효사유 :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시행
4. 실효 및 지형도면 : 생략(김해시 도시계획과 비치)
5. 관계도서는 김해시 도시계획과(☎ 055-330-359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

김해도시계획시설 실효 결정(정정) 조서

1 도로

- ▷ 정정 전
 -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83	10	국지도로	314	중2-54	중1-5	일반도로	-	2004.05.06	미집행구간 간실효
변경	소로	3	395	4~6	국지도로	126	내덕동 산1-15	중1-5	일반도로	-	2004.05.06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 1-83호선	소로 3-395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집행구간(폭원,연장) 실효 - 폭원 : 10m → 4~6m - 연장 : 314m → 126m - 면적 : 3,153㎡ → 8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일부구간에 대하여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미시행구간에 대하여 폐지

- ▷ 정정 후
 -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83	10	국지도로	314	중2-54	중1-5	일반도로	-	2004.05.06	미집행구간 간실효
변경	소로	3	395	4~6	국지도로	131	내덕동 산1-15	중1-5	일반도로	-	2004.05.06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 1-83호선	소로 3-395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집행구간(폭원,연장) 실효 - 폭원 : 10m → 4~6m - 연장 : 314m → 131m - 면적 : 3,153㎡ → 9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일부구간에 대하여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미시행구간에 대하여 폐지

- 정정사유 : 일부 집행 시설에 대한 실효 고시 오류

공 고

김해시 공인조례 제7조(재등록 및 폐기), 및 제10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김 해 시



1. 재등록 공인 최초 사용일자 : 2024. 5. 30.
2. 폐기 공인 폐기일자 : 2024. 5. 30.
3. 재등록 공인내역 : 1개

공 인 명	규격 (cm)	재료	서 체	등 록 사 유	관리부서
민원사무 김해시인 내외동장 인용	2.1 *2.1	흑인조	훈민정음체	서체변경에 따른 재등록 (전서체 → 훈민정음체)	내외동

4. 폐기 공인내역 : 1개

공 인 명	규격 (cm)	재료	서 체	등 록 사 유	관리부서
민원사무 김해시인 내외동장 인용	2.1 *2.1	흑인조	전서체	서체변경에 따른 재등록 (전서체 → 훈민정음체)	내외동

5. 재등록 인영부 : 1개

구 분	공 인 명	규격 (cm)	재료	서체	인 영
재 등록	민원사 무 김내전 해동장 외 동 장	2.1 *2.1	흑인조	훈민정음체	

6. 폐기 인영부 : 1개

구 분	공 인 명	규격 (cm)	재료	서체	인 영
폐 기	민원사 무 김내전 해동장 외 동 장	2.1 *2.1	흑인조	전서체	

김해 대동침단일반산업단지 준공인가 공고

김해시 고시 제2017-172호(2017. 6. 29.)로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된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500번지 일원의 김해대동침단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김 해 시 장

1. 사업의 명칭 : 김해대동침단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73번길 15, 203,206호(경보더숲시티)

나. 성 명 : 김해대동침단산업단지 주식회사

3.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500번지 일원

나. 면 적 : 2,806,746.3㎡

4. 준공인가연월일 : 2024. 5. 30.

5. 토지 및 공공시설 등의 관리처분계획

가. 토지

구분	면적(㎡)	비율(%)	관리처분계획	비고
사업대상지 합계	2,806,746.3	100.0		
유상공급 소계	1,604,094.3	57.2		
산업시설용지	1,118,735.3	39.9	사업시행자 귀속	
산업시설	1,100,740.3	39.3	사업시행자 귀속	
연구시설	17,995.0	0.6	사업시행자 귀속	
복합용지	192,265.5	6.9	사업시행자 귀속	
주거시설용지	131,327.9	4.7	사업시행자 귀속	
근린생활시설	25,272.7	0.9	사업시행자 귀속	
공동주택	66,131.0	2.4	사업시행자 귀속	
단독주택	39,924.2	1.4	사업시행자 귀속	
지원시설용지	161,765.6	5.7	사업시행자 귀속	
지원시설	42,434.4	1.5	사업시행자 귀속	
주차장	45,452.1	1.6	사업시행자 귀속	
변전소	3,000.0	0.1	사업시행자 귀속	
학교	12,008.0	0.4	사업시행자 귀속	
공공청사	4,867.0	0.2	사업시행자 귀속	
종합문화복지센터	6,167.0	0.2	사업시행자 귀속	
컨벤션/기업지원센터	22,547.0	0.8	사업시행자 귀속	
폐기물처리시설	25,290.1	0.9	사업시행자 귀속	
무상공급 소계	1,202,652.0	42.8		
도로	516,883.9	18.4	김해시 무상귀속	· 하천중복 5,053.0㎡ 포함 · 광장중복 2,347.0㎡ 포함
공원	284,896.9	10.2	김해시 무상귀속	
녹지	255,008.3	9.1	김해시 무상귀속	
하천	69,532.6	2.5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 도로중복 5,053.0㎡ 제외 - 국토교통부(159.7㎡) - 농림축산식품부(21,066.3㎡) - 한국농어촌공사(48,306.6㎡)
광장	14,818.5	0.5	국토교통부, 김해시	· 도로중복 2,347.0㎡ 제외 - 국토교통부(12,510.6㎡) - 김해시(2,307.9㎡)
공공공지	966.6	0.0	김해시 무상귀속	
마을회관	660.0	0.0	김해시 무상귀속	
구거	3,225.2	0.1	김해시 무상귀속	
유수지	34,990.0	1.2	김해시 무상귀속	
수질오염방지시설	21,670.0	0.8	김해시 무상귀속	

산업단지구역 외 사업	7,100			
제2진입도로	7,100	-	김해시 무상귀속	· B=22.5m ~ 25.5m, L=213m

※ 산업단지 외 사업으로 제2진입도로의 준공은 국지도69호선의 연계 공사일정에 따름

나. 시설물 : 관리부서 이관

구분	개소	면 적(㎡)	비고
합계		1,143,476.7	
도로	91개 노선	514,536.9	부대시설 포함
공원	9개소	284,896.9	부대시설 포함
녹지	12개소	255,008.3	부대시설 포함
하천	1개소	10,357.3	부대시설 포함
광장	1개소	17,165.5	부대시설 포함
공공공지	1개소	966.6	-
마을회관	1개소	660	-
구거	1개소	3,225.2	부대시설 포함
유수지	3개소	34,990	부대시설 포함
수질오염방지시설	2개소	21,670	-

6. 도로사용개시 공고에 관한 사항(도로법 제39조, 시행규칙 제14조)

가. 사용 개시 도로 현황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사용 개시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대로	2	1-10	31~34	보조 간선 도로	584	대로3-1-14	중로1-57	일반 도로	-	'24. 5. 30.
대로	3	1-11	28	보조 간선 도로	1,116	산업단지 구역계	대로2-1-10	일반 도로	-	
대로	3	1-14	28	보조 간선 도로	1,400	대로2-1-10	산업단지 구역계	일반 도로	-	
중로	1	57	20	집산 도로	1,631	대로3-1-11	중로1-59	일반 도로	-	
중로	1	2	20	집산 도로	465	소로3-580	중로1-80	일반 도로	-	
중로	1	58	20	집산 도로	149	중로1-57	월촌마을 구역경계	일반 도로	-	
중로	1	59	20	집산 도로	700	중로1-57	월촌리 845-8번지	일반 도로	-	
중로	1	61	23	집산 도로	395	대로2-1-10	중로1-59	일반 도로	-	

등급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사용 개시일
	류별	번호	폭원 (m)							
중로	1	62	20	집산 도로	305	대로3-1-11	중로1-57	일반 도로	-	'24. 5. 30.
중로	1	65	20	집산 도로	1,237	대로3-1-11	대로3-1-14	일반 도로	-	
중로	1	68	20	집산 도로	248	대로3-1-11	중로1-65	일반 도로	-	
중로	1	69	20	집산 도로	918	중로1-65	월촌리 1311-1번지	일반 도로	-	
중로	1	73	20	집산 도로	395	대로3-1-14	중로1-59	일반 도로	-	
중로	1	75	20	집산 도로	313	대로3-1-14	중로1-69	일반 도로	-	
중로	1	76	20	집산 도로	388	대로3-1-14	조눌리 186-20번지	일반 도로	-	
중로	1	77	20	집산 도로	275	대로3-1-14	소로3-573	일반 도로	-	
중로	1	78	20	집산 도로	254	대로3-1-14	중로2-56	일반 도로	-	
중로	1	79	23	특수 도로	93	중로1-59	월촌리 1281-20번지	보행자 도로	-	
중로	1	86	20	집산 도로	251	대로3-1-11	중로1-65	일반 도로	-	
중로	1	87	20	집산 도로	752	중로1-69	중로1-65	일반 도로	-	
중로	1	88	20	집산 도로	271	대로3-1-14	중로1-69	일반 도로	-	
중로	1	89	20	집산 도로	611	대로3-1-14	중로1-73	일반 도로	-	
중로	1	90	20	집산 도로	10	중로1-57	덕산리 418-13번지	일반 도로	-	
중로	1	91	20	집산 도로	367	대로3-1-14	중로1-76	일반 도로	-	
중로	1	100	20	집산 도로	152	중로1-75	중로1-78	일반 도로	-	
중로	2	73	17	집산 도로	303	중로1-57	중로1-58	일반 도로	-	
중로	2	76	17	국지 도로	248	대로3-1-11	중로1-65	일반 도로	-	
중로	2	77	17	국지 도로	523	중로2-76	중로2-76	일반 도로	-	
중로	2	81	17	집산 도로	384	중로1-65	대감리 932-4번지	일반 도로	-	

등급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사용 개시일
	류별	번호	폭원 (m)							
중로	1	92	20	집산도로	300	대로3-1-14	중로1-78	일반도로	-	'24. 5. 30.
중로	2	89	17	집산도로	381	대로3-1-14	중로1-2	일반도로	-	
중로	3	69	13.5	국지도로	217	중로1-77	중로2-89	일반도로	-	
중로	2	96	17	집산도로	678	중로1-57	중로1-62	일반도로	-	
중로	2	97	17	집산도로	209	중로1-57	중로2-99	일반도로	-	
중로	2	98	17	집산도로	209	중로1-57	중로2-99	일반도로	-	
중로	2	99	17	집산도로	271	대로2-1-10	중로1-62	일반도로	-	
중로	2	100	17	집산도로	384	대로2-1-10	중로1-59	일반도로	-	
중로	2	101	17	집산도로	395	대로2-1-10	중로1-59	일반도로	-	
중로	2	102	17	집산도로	295	중로1-65	중로1-86	일반도로	-	
중로	2	103	17	집산도로	343	중로1-65	중로2-81	일반도로	-	
중로	2	104	17	집산도로	233	중로1-87	중로2-106	일반도로	-	
중로	2	105	17	집산도로	233	중로1-87	중로2-106	일반도로	-	
중로	2	106	17	집산도로	369	중로1-65	중로1-87	일반도로	-	
중로	2	107	17	집산도로	369	중로1-65	중로1-88	일반도로	-	
중로	2	108	17	집산도로	369	중로1-65	중로1-88	일반도로	-	
중로	2	110	17	집산도로	395	대로2-1-10	중로1-59	일반도로	-	
중로	2	111	17	집산도로	369	중로1-73	중로1-89	일반도로	-	
중로	2	112	17	집산도로	171	중로1-89	중로2-111	일반도로	-	
중로	2	113	17	집산도로	171	중로1-89	중로2-111	일반도로	-	
중로	2	114	17	집산도로	445	중로1-59	월촌리 724번지	일반도로	-	

등급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사용 개시일
	류별	번호	폭원 (m)							
중로	2	92	17	국지 도로	167	중로1-57	덕산리 416-1번지	일반 도로	-	'24. 5. 30.
중로	2	93	17	국지 도로	173	중로1-57	중로2-96	일반 도로	-	
중로	2	94	17	집산 도로	209	중로1-57	중로2-96	일반 도로	-	
중로	2	95	17	집산 도로	307	중로1-62	중로2-94	일반 도로	-	
중로	2	47	17	국지 도로	35	중로1-68	중로2-76	일반 도로	-	
중로	2	50	17	국지 도로	35	대로2-1-10	중로2-77	일반 도로	-	
중로	2	51	17	집산 도로	273	대로3-1-14	중로1-69	일반 도로	-	
중로	2	56	17	집산 도로	181	중로1-78	중로1-75	일반 도로	-	
중로	2	57	17	국지 도로	170	중로2-76	중로2-77	일반 도로	-	
중로	1	99	20	집산 도로	305	대로3-1-14	중로1-69	일반 도로	-	
중로	3	51	12	집산 도로	105	월촌리 900-18번지	월촌리 121-1번지	일반 도로	-	
중로	3	53	13.5	국지 도로	222	중로1-92	중로1-92	일반 도로	-	
중로	3	54	13.5	국지 도로	212	중로1-77	중로2-89	일반 도로	-	
중로	3	55	13.5	국지 도로	158	중로1-78	월촌리 1311-10번지	일반 도로	-	
소로	1	231	10	집산 도로	16	중로1-69	조눌리 188-14번지	일반 도로	-	
소로	1	232	10	특수 도로	42	중로1-57	중로2-73	보행자 도로	-	
소로	1	234	10	특수 도로	35	대로3-1-11	중로2-77	보행자 도로	-	
소로	1	237	10	특수 도로	34	중로2-77	중로1-65	보행자 도로	-	
소로	1	245	10	특수 도로	152	중로1-75	중로1-78	보행자 도로	-	
소로	1	246	10	특수 도로	72	중로1-99	중로1-75	보행자 도로	-	
소로	1	265	10	국지 도로	41	중로2-73	산업단지 구역계	일반 도로	-	

등급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사용 개시일
	류별	번호	폭원 (m)							
소로	2	683	8	국지 도로	218	중로3-69	중로3-54	일반 도로	-	'24. 5. 30.
소로	2	684	8	국지 도로	46	소로2-683	소로2-685	일반 도로	-	
소로	2	685	8	국지 도로	218	중로3-69	중로3-54	일반 도로	-	
소로	2	686	8	국지 도로	50	소로2-685	소로2-687	일반 도로	-	
소로	2	687	8	국지 도로	218	중로3-69	중로3-54	일반 도로	-	
소로	2	688	8	국지 도로	45	소로2-687	소로2-689	일반 도로	-	
소로	2	689	8	국지 도로	218	중로3-69	중로3-54	일반 도로	-	
소로	2	690	8	국지 도로	205	중로3-69	중로3-69	일반 도로	-	
소로	2	691	8	특수 도로	22	중로1-77	소로2-683	보행자 도로	-	
소로	2	692	8	특수 도로	22	소로2-689	중로2-89	보행자 도로	-	
소로	3	561	6	국지 도로	60	중로2-89	하사마을 구역경계	일반 도로	-	
소로	3	562	6	특수 도로	28	중로3-53	중로1-92	보행자 도로	-	
소로	3	563	6	특수 도로	28	대로3-1-14	중로3-53	보행자 도로	-	
소로	3	564	6	특수 도로	30	대로3-1-14	중로3-54	보행자 도로	-	
소로	3	572	6	특수 도로	102	중로3-54	소로2-686	보행자 도로	-	
소로	3	573	6	특수 도로	109	중로1-2	중로1-77	보행자 도로	-	
소로	3	574	6	국지 도로	6	중로2-690	소로3-575	일반 도로	-	
소로	3	575	6	특수 도로	8	소로3-574	월촌리 1328-8번지	보행자 도로	-	
소로	3	576	6	국지 도로	6	중로2-690	소로3-577	일반 도로	-	
소로	3	577	6	특수 도로	8	소로3-576	월촌리 1328-8번지	보행자 도로	-	

나. 도로사용개시 도면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24. 5. 30. ~ 2024. 6. 20.

○ 열람장소 : 김해시 도시개발과 산업단지계획팀(☎055-330-6854)